

定 款

2022.03.29.

팬오션 株式會社

목 차

제 1 장 총 칙	5
제 1 조 (상호).....	5
제 2 조 (목적).....	5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6
제 4 조 (광고방법).....	6
제 2 장 주 식	7
제 5 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7
제 6 조 (일주의 금액).....	7
제 7 조 (회사설립시 발행주식의 총수).....	7
제 8 조 (주식의 종류).....	7
제 9 조의 2 (우선주식의 발행 및 우선주주의 권리)	8
제 9 조의 3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8
제 9 조의 4 (상환주식의 발행)	9
제 9 조의 5 (전환주식의 발행)	10
제 10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 등록).....	11
제 11 조 (신주인수권)	12
제 12 조 (주식매수선택권).....	13
제 13 조 (동등배당).....	14
제 14 조 (명의개서대리인).....	14
제 15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15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5
제 3 장 사 채	17
제 17 조 (사채의 발행).....	17
제 18 조 (전환사채의 발행).....	17
제 19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8
제 19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19
제 19 조의 3 (사채발행에 대한 준용규정).....	19
제 4 장 주 주 총 회	20
제 20 조 (소집시기).....	20
제 21 조 (소집권자).....	20
제 22 조 (소집통지 및 공고)	20
제 23 조 (소집지)	20
제 24 조 (의장).....	21

제 25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21
제 26 조 (주주의 의결권)	21
제 26 조의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21
제 26 조의 3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21
제 26 조의 4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2
제 27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22
제 28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22
제 29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22

제 5 장 이사·이사회 및 위원회23

제 30 조 (이사의 수 및 구성)	23
제 31 조 (이사의 선임)	23
제 32 조 (이사의 임기)	23
제 33 조 (이사의 보선)	23
제 34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24
제 35 조 (이사의 직무)	24
제 36 조 (상담역 및 고문)	24
제 37 조 (이사회의 구성, 기능 및 권한)	24
제 38 조 (이사회의 소집)	25
제 39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25
제 40 조 (이사회의 의사록)	25
제 41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5
제 41 조 의 2 (이사의 책임 감경)	26
제 42 조 (위원회)	26
제 43 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6
제 44 조 (보수위원회)	27
제 45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27
제 45 조의 2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28
제 46 조 (감사록)	29
제 46 조의 2 (내부거래위원회)	29

제 6 장 계 산30

제 47 조 (사업년도)	30
제 48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30
제 49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31
제 50 조 (이익금의 처분)	31
제 51 조 (주식의 소각)	31
제 52 조 (이익배당)	31
제 52 조의 2 (중간배당)	32
제 52 조의 3 (분기배당)	32
제 53 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33

제 7 장 해 산	34
제 54 조 (해산의 사유).....	34
제 55 조 (잔여재산의 처분).....	34
제 8 장 경영권 취득	35
제 56 조 (경영권 취득).....	35
제 9 장 이사 및 주요주주의 보유지분 통지	36
제 57 조 (보유지분에 대한 통지).....	36
부 칙	37

Pan Ocean 주식회사 정관

制定	1966. 05. 28.	改正	1967. 12. 01.
改正	1970. 06. 04.	改正	1970. 09. 01.
改正	1973. 12. 22.	改正	1980. 08. 26.
改正	1980. 09. 26.	改正	1982. 02. 01.
改正	1983. 12. 22.	改正	1984. 03. 29.
改正	1984. 05. 03.	改正	1984. 10. 23.
改正	1985. 12. 20.	改正	1993. 11. 05.
改正	1997. 03. 01.	改正	2002. 06. 26.
改正	2004. 11. 08.	改正	2005. 03. 16.
改正	2005. 04. 18.	改正	2007. 03. 26.
改正	2008. 10. 31.	改正	2010. 03. 29.
改正	2012. 03. 29.	改正	2013. 02. 20.
改正	2013. 03. 26.	改正	2013. 11. 22.
改正	2015. 07. 24.	改正	2019. 03. 27.
改正	2022. 03. 29.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팬오션 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Pan Ocean Co., Ltd. (약호: 팬오션 또는 Pan Ocean)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해운업
- 2) 무역업
- 3) 종합물류업
- 4) 복합운송주선업
- 5) 항만운송사업
- 6) 항만시설유지관리업

- 7) 육상운송사업
- 8) 육상화물운송주선업
- 9) 화물터미널사업
- 10) 창고업
- 11) 양곡Silo업
- 12) 부동산업
- 13) 운수 관련 서비스업
- 14) 정보 통신 사업
- 15) 무역 대리업
- 16) 농수산물, 축산물 도소매업
- 17) 연수원 운영사업
- 18) 위 1호 내지 17호에 관련되는 사업에의 투자 및 용자
- 19) 위 1호 내지 18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panocean.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인 한국경제신문에 게재 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00주로 한다.
- ② [삭제]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각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0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설립시 발행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주의 금액이 금 5,000원인 보통주식 25,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제 9 조 (종류주식의 발행)

- ① 회사의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우선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또는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제9조의 2 내지 제9조의 5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각 해당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의 2(우선주식의 발행 및 우선주주의 권리)

-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우선주식(이 정관에서 이러한 주식을 “우선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배당한다.
- ⑥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우선주주들을 보통주식과 동일한 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⑦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⑧ [삭제]
- ⑨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⑩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의 3(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정관에서 이러한 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못 한다.
-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이 우선주식인 경우, 해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의 4 (상환주식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 정관에서 이러한 주식을 “상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 결의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상환가액: 해당 상환주식의 발행가액에 일정한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2. 현물상환: 상환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종류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현물상환 대상 자산의 종류, 가액결정방법, 교부방법 등 현물상환의 조건. 단, 현물상환 대상 자산의 가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상환기간: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우선적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상환에 충분한 이익이 생길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i)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ii) 이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4. 상환통지: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상환주식의 취득일 2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상환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거나 공고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알리고, 위 기간의 만료시에 해당 상환주식은 강제상환된다.

5. 상환방법: 이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이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결의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위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

2. 상환청구기간 및 방법: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우선적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상환에 충분한 이익이 생길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연장된다.

(i)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ii) 이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하지 못 하는 경우

제 9 조의 5 (전환주식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 정관에서 이러한 주식을 “전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주주가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 결의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전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해당 전환주식과 동수로 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청구가 없더라도 회사가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결의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정한 사항
 2. 전환의 사유: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기술 도입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사유로 한다.
 3. 전환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통지: 전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회사의 이사회는 해당 전환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 대상인 전환주식의 내용,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등을 통지 또는 공고로 알려야 한다.
- ④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 등록)

- ① [삭제]
- ②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③ [삭제]

제 11 조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재산의 확보 등 회사의 장기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개인투자자 및 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신주를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제4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삭제]

제 12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이 회사는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또는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상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결의 당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3백만주 중 적은 수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이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부여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 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위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위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3 조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4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위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⑤ [삭제]
- ⑥ [삭제]

제 15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④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 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기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동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결산기를 정하는 경우, 결산기 말일의 익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를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결산기를 달리 정한 경우 결산기 말일 최종의 주주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7 조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 및 이율, 사채의 상환기간, 발행방법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8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재산의 확보 등 회사의 장기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개인투자자 및 법인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 회사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재산의 확보 등 회사의 장기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개인투자자 및 법인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사채의 액면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9 조의 3 (사채발행에 대한 준용규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20 조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또는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1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삭제]
- ④ [삭제]

제 23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4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6 조 (주주의 의결권)

-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삭제]
- ⑥ [삭제]

제 26 조의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제 26 조의 3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6 조의 4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7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의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삭제]

제 28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② [삭제]

제 29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 및 위원회

제 30 조 (이사의 수 및 구성)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4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최소한 3명의 사외이사를 두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한민국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 선임시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 ④ 이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이 회사와 이 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제 32 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삭제]

제 33 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제 34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② 대표이사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5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사내이사 중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회사의 고문 또는 상담역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37 조 (이사회 구성, 기능 및 권한)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의 주요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권한이 있다.

제 38 조 (이사회 의 소집)

-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의장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이사에게 회일 2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9 조 (이사회 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 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삭제]

제 40 조 (이사회 의 의사록)

- ① 이사회 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1 조 의 2(이사의 책임 감경)

이사가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은 이사가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법 제397조의 경업 내지 겸업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제397조의2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상법 제398조의 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 책임 감경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42 조 (위원회)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보수위원회
3. 감사위원회
4. 내부거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각 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3 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최소한 세 명의 이사들로 구성하되, 의장을 포함한 과반수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 44 조 (보수위원회)

- ① 보수위원회는 이사 및 주요 임원들의 보수체계를 이사회에 제안하고 보수내역 명세를 제시한다.
- ② 보수위원회는 최소한 세 명의 이사로 구성하되, 의장을 포함한 과반수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또한 보수위원회는 임원 보수에 관한 분야에 식견이 있는 이사가 한 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 및/또는 외부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 45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정한 규정을 서면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의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감사의 범위 및 결과, 감사비용의 효율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적합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업무. 단,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 외에 상당한 분량의 용역을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적합성과 비용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해 용역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업무
 - 2. 회사의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감사인 또는 내부 감사담당자와 연례회의 개최
 - 3.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연례평가
 - 4. 외부감사인(들) 선임
 - 5. 이사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회사의 거래에 관한 감독
- ②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세 명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이 상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고, 의장을 포함한 3분의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⑨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5 조의 2(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46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수행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의장과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46 조의 2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계 산

제 47 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8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연결재무제표
 4. 그 밖에 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서류
- ② 위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의 내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대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9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50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51 조 (주식의 소각)

[삭제]

제 52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52 조의 2(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 주주에게, 또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경우는 영업년도 중 1 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 52 조의 3(분기배당)

-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제 53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 1 항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7 장 해 산

제 54 조 (해산의 사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산한다.

1. 대한민국 상법 제434조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 회사의 파산
3.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제 55 조 (잔여재산의 처분)

해산완료 이후의 잔여재산 및 이익은 우선주주(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종류주식의 경우에 한함)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나머지 재산 및 이익은 보통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 8 장 경영권 취득

제 56 조 (경영권 취득)

[삭제]

제 9 장 이사 및 주요주주의 보유지분 통지

제 57 조 (보유지분에 대한 통지)

[삭제]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언어)

본 정관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다. 그 해석에 있어 상충할 때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부칙 (2007. 3. 26.)

제1조 (시행일)

제2조 및 제11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 제12조, 제51조 및 제52조의 개정 규정은 회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 상장한 때로부터 시행하고, 그 전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 2 조 (언어)

본 정관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고, 그 해석에 있어 상충할 때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부칙 (2010.3.29)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언어)

본 정관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다. 그 해석에 있어 상충할 때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부칙 (2012.3.29.)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언어)

본 정관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다. 그 해석에 있어 상충할 때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부칙 (2013.2.20.)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언어)

본 정관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다. 그 해석에 있어 상충할 때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부칙 (2013.3.26.)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언어)

본 정관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다. 그 해석에 있어 상충할 때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부칙 (2013.11.22.)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언어)

본 정관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다. 그 해석에 있어 상충할 때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부칙 (2015.07.24.)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언어)

본 정관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다. 그 해석에 있어 상충할 때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부칙 (2019. 03. 27.)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 제18조의2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언어)

본 정관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다. 그 해석에 있어 상충할 때에는 국문본이 우선한다.

부칙 (2022. 03. 29.)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